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8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윤후덕

신동근 • 권칠승 • 김병욱

임종성 · 김경협 · 강훈식

전용기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 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

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의 소규모 전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한)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	
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	
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신 설>

1의2. ~ 9. (생략) ② ~ ① (생략) _____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
당하는 건축물·공작물 또
는 제1호의2에 따른 도시
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
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① (현행과 같음)